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안전점검의 실시시기) ① 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  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정기안전점검 : 별표 1의 정  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  으로 실시. 다만, <u>발주자는</u> 안  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 때 건설공사의 규모, 기간, 현  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23조(정기안전점검의 실시) ① 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 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  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1조(안전점검의 실시시기) ①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 -----  ----- <u>발주청 또는</u>  <u>인·허가기관의 장은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정기안전점검의 실시) ① 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 ----- 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 <u>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(타</u>  <u>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).</u></p>

4. (생략)

⑤·⑥ (생략)

제31조(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<신설>

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·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① 시공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2회(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,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) 작성하여 제출하되,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.

2. 타워크레인 이외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한다.

3.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

